경상북도

도보
www.gb.go.kr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718호 2023년 3월 16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6호) ····· 6

회람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경주 구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7호) ····· 17

○ 경주 문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8호) ····· 36

○ 경주 외동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9호) ····· 54

○ 새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70호) ····· 75

○ 연회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23-71호) ····· 77

○ 황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안)
(경상북도 고시 제2023-72호) ····· 79

○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73호) ····· 81

■ 공 고

○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56호) ····· 83

○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59호) ····· 86

○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공고 제2023-560호) ····· 90

○ 의료법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71호) ····· 101

○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75호) ····· 103

시 군

■ 고 시

○ 경주 외동3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3-63호) ····· 106

○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안동시 제2023-35호) ····· 109

○ 구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액화가스저장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고시 제2023-69호) ····· 112

○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고시 제2023-21호) ····· 115

■ 공 고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3-457호) ····· 119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2호) ····· 122

○ 하천점용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3호) ····· 123

○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6호) ····· 124

○ 하천점용 허가사항
(보현산댐지사 고시 제2023-1호) ····· 125

◈◈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3-66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 고시

지방도914호선「안계 용기도로 건설공사」추진에 따라「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위치 및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가. 사업노선 : 지방도 912호선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일원

다. 변경사유 : 안계 용기도로 건설공사 에 따른 선형개량 및 확폭

2.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구역	지방도	912	청리~ 현서선	안계면 용기리	18,641	용기리 소로2-26	용기리 1호광장	없음	0.939

3. 군관리 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중로	3	20	9~12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939	용기리 소로2-26	용기리 1호광장	-	-	
폐지	소로	3	67	7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591	용기리 소로3-68	용기리 1호광장	-	경상북도 고시 제337호 (1977.10.12.)	
폐지	소로	3	68	7	일반도로	국지도로	348	용기리 소로2-26	용기리 소로3-67	-	경상북도 고시 제227호 (1991.6.26.)	

(나)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67 소로3-68	중로3-20	• 폭원 변경 및 폐합 폭원 = 8m → 9 ~ 12m	- '지방도912호선 (안계 용기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기존 소로 폐지 및 중로 3류의 신설

4. 사업시행기간

○ 안계 용기도로 건설공사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6. 설계도서,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 공람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054-850-3243)

7.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등 : 별첨

※ 첨부서류 : 5천분의 1 지형도(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공사명 : 안계 용기도로 건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계					48,752	18,641		
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8	580	278	국유지	
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0-4	317	69	국유지	
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55	22	22	김*임	
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40	19	19	공유지	
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45	20	20	국유지	
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54	49	49	김*임	
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44	8	8	국유지	
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9	24	24	공유지	
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8-3	12	12	공유지	
1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8-5	38	38	이*훈	
1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7-3	13	13	김*영	
1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1107-8	29,624	714	국유지	
1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7-6	7	7	김*영	
1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7-4	195	195	김*영	
1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53	37	37	이*모	
1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12	3	3	국유지	
1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52	12	12	이*원	
							옥*배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1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2-2	93	93	국유지	
1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11	36	36	공유지	
2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1	49	49	김*하	
2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0-1	-	356	국유지	
2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2	23	23	김*하	
2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4	6	6	김*학	
2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3	7	7	옥*배	
							이*원	
2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10	397	397	우*	
2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5	103	103	여*구	
2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16	463	463	공유지	
2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10	165	96	공유지	
2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5-1	20	20	홍*진	
3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5-4	88	88	우*구	
3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5-2	26	8	국유지	
3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6-7	48	48	우*구	
3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6-4	89	70	공유지	
3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6-10	86	86	우*구	
3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0-2	-	2,161	국유지	
3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9-9	6	6	이*숙	
3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9-4	172	2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3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9-8	22	22	이*숙	
3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8-3	30	30	김*연	
4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9-5	158	158	공유지	
4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9-6	92	92	김*연	
4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0-10	128	128	평**서	
4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0-12	72	72	박*우	
4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1-7	72	72	이*숙	
4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1-6	135	135	박*철	
4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6-11	42	42	박*웅	
4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6-7	255	255	박*암	
4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6-3	50	50	박*암	
4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5-4	419	398	공유지	
5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5-2	162	162	국유지	
5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5-3	60	60	우*근	
5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7-1	13	13	김*환	
5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7-2	50	50	국유지	
5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7-3	23	23	공유지	
5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8-4	73	73	박*규	
5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8-7	46	46	박*규	
5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8-11	709	709	김*환	
5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8-6	23	23	박*규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5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8-2	298	186	국유지	
6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9-2	328	37	공유지	
6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8-1	2	2	박*규	
6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48-3	10	10	김*영	
6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산10-20	375	375	박*호	
6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산10-19	66	66	김*화	
							권*효	
6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산10-16	41	41	국유지	
6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산10-22	61	61	박*호	
6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산10-21	21	21	김*화	
							권*효	
6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산10-15	122	122	박*호	
6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산10-17	147	137	국유지	
7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41-19	159	65	공유지	
7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1-9	57	57	김*숙	
							신*지	
							신*건	
							신*환	
							신*현	
7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14	9	6	국유지	
7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1-4	16	16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7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10	632	10	국유지	
7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1-1	80	80	국유지	
7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0-5	224	224	국유지	
7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7-1	1,441	223	국유지	
7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7-3	19	19	국유지	
7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10-6	73	73	국유지	
8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97-7	25	25	김*영	
8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9-4	55	55	국유지	
8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9-6	174	174	정*호	
							김*자	
8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9-3	83	83	김*숙	
8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7-12	57	57	김*애	
8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7-10	54	54	황*만	
8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7-9	12	12	공유지	
8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7-11	174	174	손*복	
8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07-8	264	264	손*복	
8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2-6	132	132	김*희	
9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2-8	44	44	김*희	
9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2-3	106	106	김*길	
9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2-4	55	55	최*자	
9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2-7	69	69	김*희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9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30	69	69	김*자	
9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2	291	291	국유지	
9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1-51	262	262	김*희	
9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1107-43	40	40	국유지	
9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32	29	29	박*정	
9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30	239	239	윤*분	
10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29	900	900	김*희	
10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5-3	44	44	우*구	
10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34	46	46	우*구	
10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17	1	1	정*일	
							우*구	
10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33	65	65	손*연	
10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6-3	23	23	공유지	
10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6-9	84	84	손*연	
10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6-2	129	103	국유지	
10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31	9	9	정*월	
10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19	22	16	정*월	
11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4	688	688	공유지	
11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18	87	87	정*월	
11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64-3	132	1	국유지	
11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0-2	46	7	국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11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0-3	7	7	김*백	
11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9-2	23	22	국유지	
11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9-4	23	23	김*백	
11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0-8	10	10	박*규	
11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0-11	66	66	박*규	
11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0-4	109	109	국유지	
12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1-4	152	152	박*혁	
12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1-2	159	159	국유지	
12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71-5	120	120	박*철	
12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6-2	225	225	국유지	
12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6-12	446	446	이*숙	
12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6-5	132	132	박*혁	
12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6-8	236	236	이*숙	
12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4-4	2	2	김*수	
12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4-5	18	18	이*진	
12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4-7	129	129	박*화	
13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5-5	49	49	김*환	
13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65-9	80	80	김*이	
13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4-6	7	7	박*순	
13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7-6	163	163	김*환	
13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7-5	118	118	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135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58-12	277	277	김*환	
							신*학	
136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39-2	872	872	차*호	
							황*원	
137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39-3	320	320	김*은	
138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41-4	76	76	김*자	
139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48-4	304	284	공유지	
140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48-9	51	5	공유지	
14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48-2	26	26	국유지	
142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341-2	165	96	국유지	
143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1108-7	205	22	국유지	

경상북도 고시 제2023-67호

경주 구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구어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일반현황

가. 산업단지의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 구어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산89-1번지 일원

○ 면 적 : 829,492.3㎡

○ 사업시행자 : 구어산업단지(주) 외 5개사 대표이사 김범운

※ 경주시 공고 제2016-1510호(2016. 09.05.)에 의거 산업단지 준공

○ 관리기관 : 경주시장 (경주시 양정로 260)

나. 조성목적 (변경없음)

○ 추가 공장용지 수요발생 및 경주지역 방폐장, 양성자가속기건설로 인한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한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함으로 관련 제조업들을 집단화·계열화로 물류체계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 기 간 : 2009. 10. ~ 2016. 06. 30.

라. 추진경위 (변경)

○ 2009. 11. 03 : 산업단지계획(안) 승인신청(경주시→도)

○ 2011. 09. 15 :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제2011-379호)

○ 2012. 12. 17 :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상북도 제2012-429호)
- 사업시행자 변경

○ 2013. 07. 18 :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경상북도 제2013-318호)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2013. 07. 22 :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 정정고시
(경상북도 제2013-324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로 결정조서의 산업단지외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도로의 기점 및 최초결정일 오류에 따른 정정

○ 2014. 02. 13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상북도 제2014-52호)

○ 2014. 10. 20 :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제2014-353호)

- 사업자주소 및 토이이용계획(공원, 폐기물처리장, 도로 등) 변경

○ 2014. 11. 24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 (경상북도 제2014-401호)

○ 2015. 06. 29 :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제2015-217호)

- 산업단지 일부제척 및 구역계 분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토지이용계획(산업단시설, 지원시설, 도록 녹지 등) 변경

○ 2015. 09. 14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제2015-605호)

○ 2016. 04. 28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상북도 제2016-101호)

- 일부 구역 변경(기 공장부지, 묘지 존치 필지 등) 및 산업단지 확정측량검사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2016. 06. 27 :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경주시 제2010-11호)

- 주요 유치업종변경

○ 2016. 09. 05 : 준공인가 공고(경주시 제2016-1510호)

○ 2020. 02. 10 : 실시계획 승인 고시(경주시 제2020-17호)

- 주요 유치업종변경

○ 2020. 04. 09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117호)

마. 분양현황 (변경없음)

구 분	총면적 (㎡)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계		
계	829,492.3	522,993.3	103,279.7	626,273.0	829,492.3	-	829,492.3	2009. 10.~ 2016. 06.30.	구어산업단지(주) 외 5개사
산업시설구역 (폐기물 처리시설)	600,210.3	504,553.3	95,657.0	600,210.3	600,210.3	-	600,210.3		
지원시설구역	26,062.7	18,440.0	7,622.7	26,062.7	26,062.7	-	26,062.7		
공공시설구역	110,284.5	-	-	-	110,284.5	-	110,284.5		
녹지구역	92,934.8	-	-	-	92,934.8	-	92,934.8		

① 산업시설구역(600,210.3㎡)은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분류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상의 산업시설용지(544,787.0㎡)와 공공시설용지 중 폐기물처리시설(55,423.3㎡)임

② 녹지구역(92,934.8㎡)은 산업단지계획의 공공시설용지(258,642.6㎡) 중 녹지(55,554.9㎡)와 공원(12,009.0㎡), 수변공원(25,370.9㎡)임

※ 산업시설구역 최소 분양(분할) 면적은 1,650㎡임. 단, 기반시설(도로·용수·상하수도·전기·가스·고속통신망)이 확보되어야 함

바. 입주계획(현황) (변경없음)

구 분	입주업체수 (개)				면 적 (㎡)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계	74	33	2	109	518,837.8	26,062.7	81,372.5	626,273.0
현재	53	22	1	76	449,130.0	18,440.0	55,423.3	522,993.3
향후	21	11	1	33	69,707.8	7,622.7	25,949.2	103,279.7

※ 입주업체는 분양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 입지여건 (변경없음)

시설명	현 황	시행기관
교 통	• 경주I.C 16km, 울산역 17km, 울산공항 12km • 경주와 울산을 연결하는 국도7호선, 이동이 용이	
도로	■ 단지 내 • 노선 : 14개노선 등 총 6,427m	경주시
	■ 진입도로 • 폭원 : 20m, 연장 : 637.3m	경주시
	■ 연결도로 • 폭원 : 8m, 연장 : 53m	경주시
녹지 및 공원	• 녹지 6개소 : 55,554.9㎡ • 공원 2개소 : 37,379.9㎡	경주시

시설명	현 황	시행기관
용 수	• 용수 수요량 : 2,141㎥/일 (공업용수 1,773㎥/일, 생활용수 368㎥/일) • 배수지 저류용량 : 1,100ton/일	경주시
전 력	• 전력소요량 : 16,553Kwh (산업시설 16,453Kwh, 지원시설 100Kwh)	한국전력공사
통 신	• 수요량 1,874회선	통신사업자
오·폐수	• 발생량 : 오 · 폐수 640㎥/일 (폐수 347㎥/일, 생활오수 293㎥/일) • 폐수 : 개별공장에서 1차 처리 후 오수관로를 통해 외동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처리 • 오수 : 기존 오수관로(차집관로 D500mm)로 인입하여 외동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	경주시
폐기물	• 발생량 : 360.132ton/일 (생활 2.815ton/일, 사업장 357.317ton/일) • 일반폐기물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전량 처리 • 지정폐기물 : 전량위탁처리	입주기업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변경없음)

○ 울산 · 경남 · 경주지역의 산재한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계획적인 시설설치 운영

○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 수출증대·물류비 절감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내실화

○ 지원 및 공원 · 녹지 시설 확보하고, 근로자 복지향상과 최적의 친환경 조성

○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나. 세부관리계획 (변경없음)

○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단위 : ㎡)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 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829,492.3	600,210.3	26,062.7	110,284.5	92,934.8	

○ 입주대상업종

■ 기정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지식산업 관련시설(M70, S94 : 종교 단체, 정치 단체, 시민운동 단체 제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산업시설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E38)

※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임.

■ 변경

■ 1차 금속 제조업(C24)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지식산업 관련시설(M70, S94 : 종교 단체, 정치 단체, 시민운동 단체 제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산업시설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용도에 한함)(E38)
■ 부동산업(L68) (단,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임.

○ 입주업체 자격

■ 기정

■ 산업시설구역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단,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하며,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지원시설구역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ㆍ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ㆍ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ㆍ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변경

■ 산업시설구역
ㆍ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 및 지식기반산업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ㆍ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ㆍ 폐기물처리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단,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하며,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ㆍ 부동산업(L68) 중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지원시설구역
ㆍ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ㆍ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 · 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ㆍ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부동산업(L68) 중 부동산 임대업(6811)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입주업체제한 (변경없음)

- ■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오염총량제 저촉시 공해업종 입주를 제한
- ■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외
-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기타) 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입주우선순위 (변경없음)

-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 주변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 환경 친화적인 업체

○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 ■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 분할할 경우 업체별 용지 최소면적은 1,650㎡ 이상(공장등록 완료후 가능)이어야 하며 지분등기는 불가
-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1,650㎡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에는 고정식 구조물(담장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 충족시 가능
-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최초 취득이 불가
-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
-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충족시 관리공단등을 설립하여야 함
-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시 산업단지내 도로와 공원등의 공공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다.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없음)

(단위 : ㎡, %)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 고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829,492.3 (100.0)	600,210.3 (72.4)	26,062.7 (3.1)	110,284.5 (13.3)	92,934.8 (11.2)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도(별첨 1), 용도구역별 면적표(별첨 2)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 %)

계	공장 시설용도	지식산업 시설용도	정보통신 산업시설 용도	자원비축 시설용도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비 고
600,210.3 (100.0)	518,837.8 (86.5)	25,949.2 (4.3)	-	-	55,423.3 (9.2)	

※ 산업단지 계획의 폐기물처리장(55,423.3㎡)은 산업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용도로 지정 주요 유치업종 중 지식산업 관련시설(25,949.2㎡)은 산업시설구역의 지식산업시설용도로 지정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 기정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식기반산업 및 대상 사업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 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제9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입주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직원 및 사택), 공동주택(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의

건축물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

■ 공공시설 구역

ㆍ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ㆍ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 변경

■ 산업시설구역

ㆍ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지식기반산업 및 대상 사업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ㆍ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ㆍ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 구역

ㆍ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제9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ㆍ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ㆍ 입주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단독주택(직원 및 사택), 공동

주택(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의 건축물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

■ 공공시설 구역

ㆍ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시설구역

ㆍ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마.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없음)

(단위 : 개, ㎡)

구 분	계		현재		향후		비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76	600,210.3	54	504,553.3	22	95,657.0	
공 장 시 설 용 도	74	518,837.8	53	449,130.0	21	69,707.8	
1차 금속 제조업(C24)	1	4,069.0	–	–	1	4,069.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17	95,049.9	12	67,434.0	5	27,615.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20	57,140.5	20	57,140.5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3	314,653.0	20	308,899.5	3	5,75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3	47,925.4	1	15,656.0	12	32,269.4	

구 분	계		현재		향후		비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지식산업시설용도	1	25,949.2	-	-	1	25,949.2	
폐기물처리시설용도	1	55,423.3	1	55,423.3	-	-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 3

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변경없음)

○ 기본방향

■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 · 입주 불가
■ 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입주불가

○ 지원시설 설치계획

(단위 : 개, ㎡)

용 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블록 수
입주계약시 지정한 용도	지원시설	26,062.7	6

○ 지원시설 관리운영

■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본계획의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별첨 1 : 용도별 구역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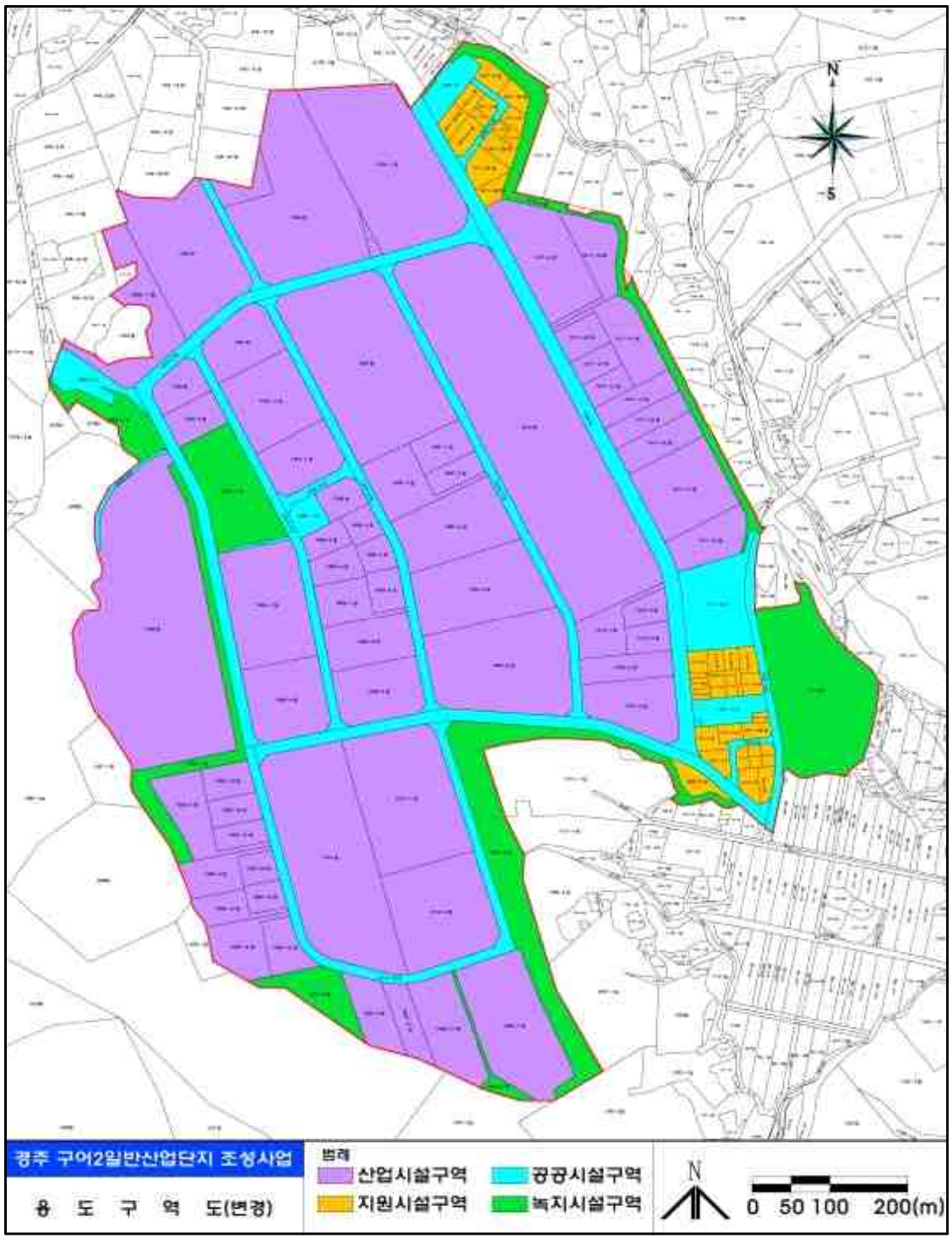

별첨 2 : 용도구역별 면적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계		829,492.3	100.0
산업시설구역	소 계	600,210.3	72.4
	공장시설용도	518,837.8	62.6
	지식산업시설용도	25,949.2	3.1
	폐기물처리시설용도	55,423.3	6.7
지원시설구역	소 계	26,062.7	3.1
	지 원 시 설	26,062.7	3.1
공공시설구역	소 계	110,284.5	13.3
	도 로	88,665.7	10.7
	주 차 장	7,960.9	1.0
	저 류 지	9,862.7	1.2
	배 수 지	3,795.2	0.4
녹지구역	소 계	92,934.8	11.2
	공 원	12,009.0	1.4
	수 변 공 원	25,370.9	3.1
	녹 지	55,554.9	6.7

별첨 3 : 업종별배치 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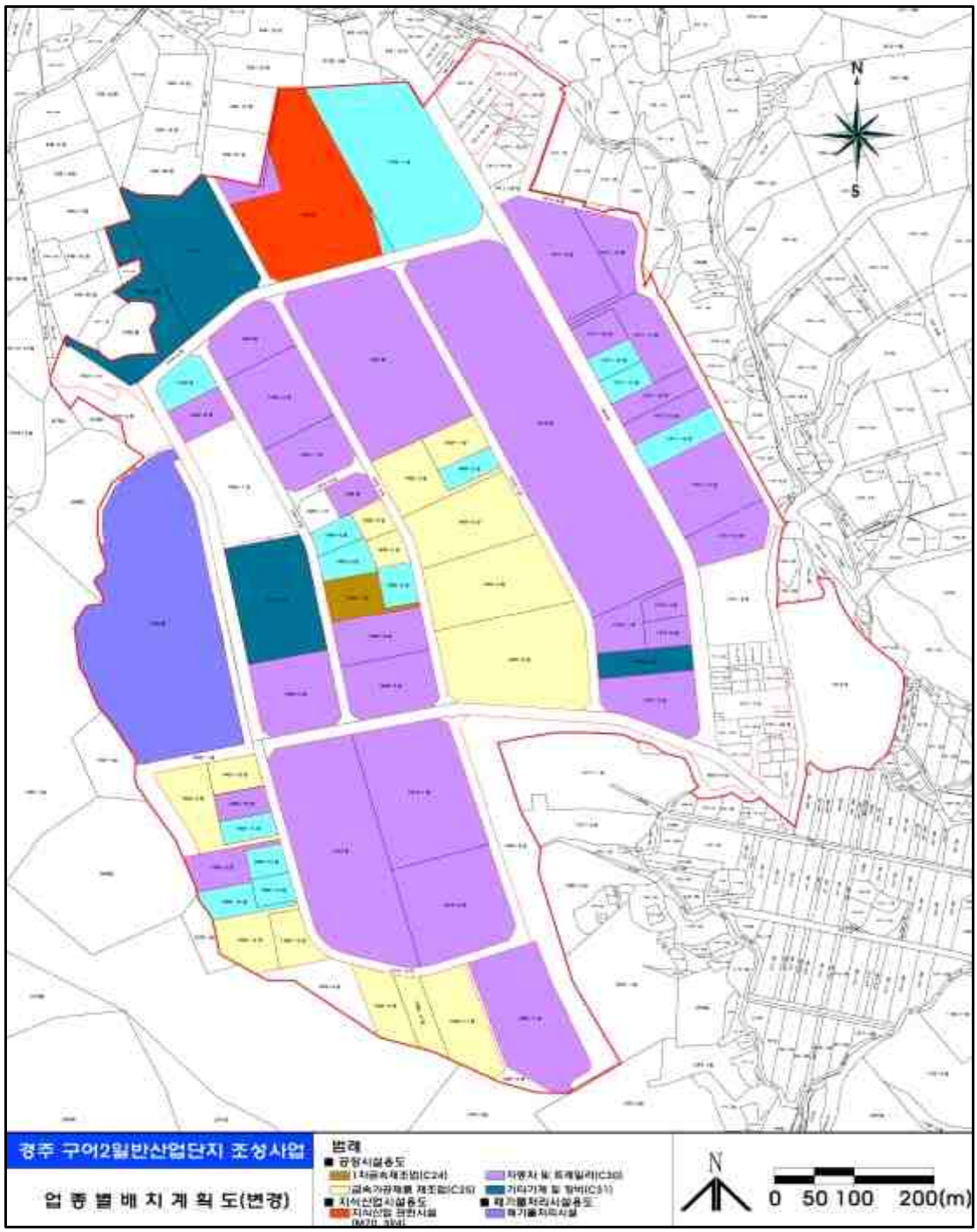

경상북도 고시 제2023-68호

경주 문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일반현황

가. 산업단지의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 경주 문산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95-1번지 일원

○ 면 적 : 314,647.8㎡

○ 사업시행자 : ㈜덕산산업개발 조경용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101-2번지)

○ 관리기관 : 경주시장 (경주시 양정로 260)

나. 조성목적 (변경없음)

○ 경주지역의 산재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산업환

경구축

○ 울산과 인접하여 입지함에 따라 울산소재 자동차 및 운송업체 등 대기업관련 제조업 위주의 집단화, 계열화로 경주지역 산업발전을 도모

○ 경주시의 특성을 반영 산·학 연계체계구축,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 생산성 증대 및 소득수준 향상 도모

다.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의한 민간개발

○ 기 간 : 2008. 01. 03. ~ 2014. 10. 31.

라. 추진경위 (변경)

○ 2007. 04. 17 : 일반산업단지 지정요청(시행자→경주시)

○ 2008. 01. 03 :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경상북도 고시 제2008-5호)

○ 2008. 11. 24 :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승인
(경상북도 고시 제2008-548호)

○ 2008. 12. 04 : 실시계획고시(경주시 고시 제2008-81호 : 도보5282호)

○ 2009. 06. 01 : 공사착공

○ 2010. 05. 13 : 문산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0-183호)

○ 2010. 11. 08 : 일반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10-93호)

○ 2010. 12. 27 :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0-605호)

○ 2011. 05. 09 :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11-610호)

○ 2011. 12. 05 :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1-520호)

○ 2013. 06. 27 :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279호)

○ 2013. 08. 26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3-362호)

○ 2014. 01. 02 :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4-3호)

○ 2014. 06. 19 :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4-202호)

○ 2015. 04. 16 : 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경주시 공고 제2015-640호)

○ 2015. 09. 24 :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15-315호)

마. 분양현황 (변경없음)

구 분	총면적 (㎡)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계		
계	314,647.8	226,034.2	-	226,034.2	314,647.8	-	314,647.8	2008. 01.03.~ 2014. 10.31.	(주) 덕산 산업 개발
산업시설 구역	218,017.1	218,017.1	-	218,017.1	218,017.1	-	218,017.1		

구 분	총면적 (㎡)	분양현황(㎡)			조성현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계		
지원시설 구역	8,017.1	8,017.1	-	8,017.1	8,017.1	-	8,017.1		
공공시설 구역	40,410.1	-	-	-	40,410.1	-	40,410.1		
녹지구역	48,203.5	-	-	-	48,203.5	-	48,203.5		

※ 산업시설구역 최소 분양(분할) 면적은 1,650㎡임. 단, 기반시설(도로·용수·상하수도·전기·가스·고속통신망)이 확보되어야 함

바. 입주계획(현황) (변경없음)

입주업체수 (개)			면 적 (㎡)		
제조업체	기타	계	제조업체	기타	계
(27)	(3)	(30)	218,017.1	8,017.1	226,034.2

※ 입주업체는 분양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 입지여건 (변경없음)

시 설 명	현 황	시행기관
교 통	경부고속도로 경주 IC 및 철도 이용 : 지방도 7호선, 모화역 3.5km 공항이용 : 울산공항 10.6km	
단지내 도로	노선 : 6개소(중로 4, 소로 2) 연장 : 1,772m(중로 1,406 소로 366) 면적 : 26,543㎡(중로 22,754 소로 3,789)	사업시행자

시 설 명	현 황	시행기관
녹 지	녹지 6개소 : 48,203.5㎡ - 경관녹지 2개소 20,570.9㎡, - 완충녹지 4개소 27,632.6㎡	경주시
용 수	보문정수장 공급용수(D350mm에서 D150~80mm분기) - 계획용량 : 1,795㎥/일(※외동공급용량 14,000㎥/일) 배수지 경주시 별도계획 용수 수요량 : 827㎥/일(공업용수682, 생활용수145) (공업용수 1,773㎥/일, 생활용수 368㎥/일) • 배수지 저류용량 : 1,100ton/일	경주시 (국토교통부 지원)
전 력	공급능력 : 7,536 Kw/년 (산업시설 7,057 지원시설 29)	한국전력공사 (외동변전소)
통 신	수요량 740회선 - 산업시설 : 545회선(0.025회선/10㎡) - 지원 : 24회선(0.03회선/10㎡) - 기타 : 171회선(지원 및 산업시설수요량의 30%)	한국통신
오·폐수	외동2산업단지→외동2산업단지(외동읍 문산리 846-6번지) 연계처리 - D=300 L=340m 외동2산업단지 오수맨홀에 연결 발생량 : 103㎥/일(오수16, 폐수87)	사업시행자
재해방지용 저류지	저류시설 2개소 : 9,300.7㎡	사업시행자
주차장	주차장 2개소 : 3,824.8㎡	사업시행자
에너지공급	연료사용량 : 5,628천Nm³/년 - 산업시설 : 5,580천Nm³/년 - 지원시설 : 48천Nm³/년	도시가스

시 설 명	현 황	시행기관
	(취사 : 46천Nm³/년 지원시설에 포함) ※ 가스 : 서라벌도시가스(주) 공급	
가스공급 시설	한국가스공사 외동 G.S	서라벌 도시가스
산업단지외의 교통시설	진입도로 2개소(대로1, 중로1) - 연장 : 1,145m(대로425,중로720) - 폭 : 20~30m 연결도로 L=97m, B=12m	경주시 (국토교통부 지원) 사업시행자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변경없음)

○ 경주지역의 산재한 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으로 협동화를 추진

○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

○ 수출증대·물류비 절감 등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내실화

○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근로자 복지향상과 최적의 친환경 조성

○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나. 세부관리계획 (변경없음)

○ 관리대상 산업단지의 면적

(단위 : ㎡)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 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314,647.8	218,017.1	8,017.1	40,410.1	48,203.5	

※ 공공시설면적은 녹지면적 제외.

○ 입주대상업종(변경)

■ 기정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단, 기계 및 가구 제외
-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임.

■ 변경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단, 기계 및 가구 제외
-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 부동산업(L68) (단,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 숫자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 임.

○ 입주업체 자격(변경)

■ 기정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사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변경

■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사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공장)으로 입주대상 업종에 한함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부동산업(L68) 중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시설구역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부동산업(L68) 중 부동산 임대업(6811)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입주제한 (변경없음)

■ 환경, 교통영향평가 및 오염총량제 저촉시 공해업종 입주를 제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악취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외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 매매, 경매, 기타) 전에 산업단지 입주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 입주우선순위 (변경없음)

■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업체
■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체
■ 주변업체와의 계열화 전문화가 가능한 업체
■ 환경 친화적인 업체
※ 경주시에 기업투자 의향서 제출한 업체는 분양심사시 우선 검토

○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 입주계약, 공장등록 등 공장건설과 가동에 필요한 행정적 업무 지원
■ 쾌적한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의 진입제한 및 저감대책 수립
■ 공장용지의 불법전매 및 임대 방지로 정상적인 제조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리
■ 분할할 경우 업체별 용지 최소면적은 1,650㎡ 이상(공장등록 완료후 가능)이어야 하며 지분등기는 불가
■ 입주 후 분할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면적을 1,650㎡이상으로 하고 분할경계에는 고정식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충족시 가능
■ 일반 임대사업자는 산업용지 및 공장 최초 취득이 불가

■ 임차공장은 최소기준 제조시설면적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공장과 지표에서 천정까지 고정식 경계벽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별도의 공장동일 경우에는 예외 적용

■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업종별 기준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범위에 따라 관리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충족시 관리공단등을 설립하여야 함

■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시 산업단지내 도로와 공원등의 공공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다.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없음)

(단위 : ㎡, %)

총면적	세 부 면 적				비 고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314,647.8 (100.0)	218,017.1 (69.3)	8,017.1 (2.5)	40,410.1 (12.9)	48,203.5 (15.3)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도(별첨 1), 용도구역별 면적표(별첨 2)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변경없음)

(단위 : ㎡, %)

계	공장 시설용도	지식산업 시설용도	정보통신 산업시설 용도	자원비축 시설용도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비 고
218,017.1 (100.0)	218,017.1 (100)	-	-	-	-	

라.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 산업시설구역 (변경없음)

■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장해 공장의 부대시설로 관리기관의 승

인을 얻은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구역(변경)

- 기정

■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7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입주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변경

■ 「산집법」 제2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7호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지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

■ 입주가능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 제1·2종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의료시설 건축물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종교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활동과 연관성이 적거나 근로자 의욕저하 업종 및 기업형 대형판매점 등은 입주불가

○ 공공시설구역 (변경없음)

■ 지원시설구역 건축물 범위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 녹지구역 (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미관, 공해저감과 근로자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녹지 및 공원용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

마.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없음)

(단위 : 개, ㎡)

구 분	계		현재		향후		비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계	27	218,017.1	27	218,017.1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1	11,389.8	1	11,389.8	-	-	기계 및 가구제외

구 분	계		현재		향후		비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5	33,711.2	5	33,711.2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12	132,976.0	12	132,976.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9	39,940.1	9	39,940.1	-	-	

※ 업종별 배치 계획도 : 별첨 3

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변경없음)

○ 기본방향 (변경없음)

■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 · 입주 불가
■ 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업 등은 입주불가

○ 지원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단위 : 개, ㎡)

용 도	세부용도(시설명)	면 적(㎡)	블록 수
입주계약시 지정한 용도	생산업무 지원시설	8,017.1	2

○ 지원시설 관리운영 (변경없음)

■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관리기본계획의 지원시설구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승인을 얻어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 관리근거

■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과 환경영향평가, 분양공고문, 분양유의사항,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관리

3. 지형도면 등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별첨 1 : 용도별 구역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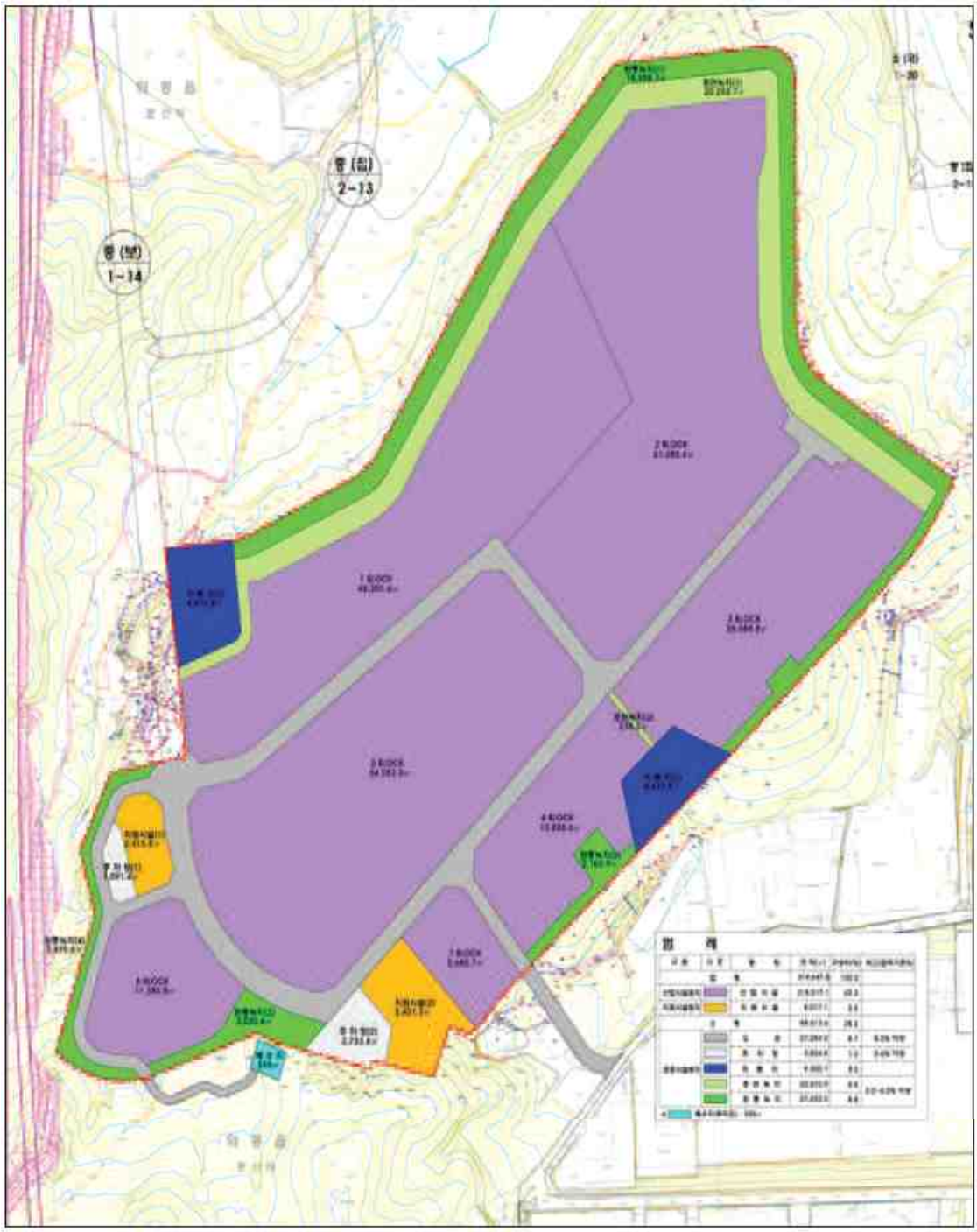

별첨 2 : 용도구역별 면적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계		314,647.8	100.0
산업시설구역		218,017.1	69.3
지원시설구역		8,017.1	2.5
공공시설구역	소 계	40,410.1	12.9
	도 로	27,284.6	8.7
	주 차 장	3,824.8	1.2
	저 류 조	9,300.7	3.0
녹지구역	소 계	48,203.5	15.3
	시 설 녹 지	20,570.9	6.5
	완 충 녹 지	27,632.6	8.8

별첨 3 : 업종별배치 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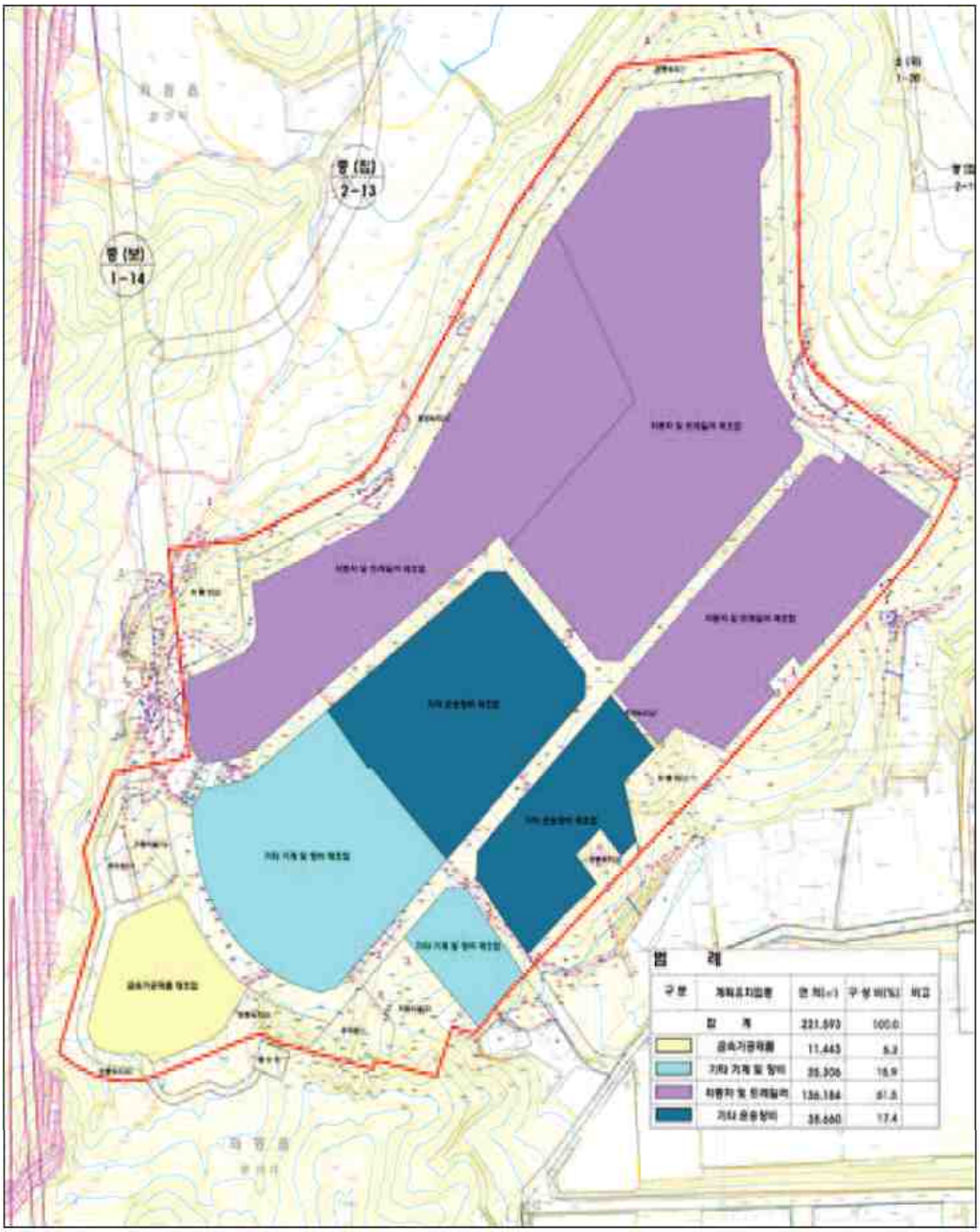

경상북도 고시 제2023-69호

경주 외동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외동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산업단지 일반현황

가. 산업단지의 개요 (변경없음)

○ 명 칭 : 외동2일반산업단지

○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산75-2번지 일원

○ 면 적 : 602,934.9㎡

○ 관리기관 : 경주시장 (경주시 양정로 260)

나. 조성목적 (변경없음)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공업입지 전략에 부응

○ 울산소재 자동차 관련업체인 각종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위주로 집단화, 계열화함으로써 경주지역 산업발전을 도모

○ 경주권내 외동읍 일원에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 경주지역의 산업시설 노후화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대두

다. 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 시행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영개발

○ 기 간 : 2013년 3월 11일 ~ 2018년 12월 31일

라. 추진경위 (변경)

○ 2003. 12. 08 : 외동2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경상북도 제2003-427호)

○ 2005. 04 ~ 06 : 환경、교통、재해、에너지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완료

○ 2006. 01. 02 :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경상북도 제2006-1,2호)

○ 2006. 03. 11 : 공사착공

○ 2006. 10. 19 : 관리기본계획승인(경상북도 제2006-386)

○ 2007. 04. 02 :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경상북도 제2007-170호)

○ 2007. 07. 26 : 관리기본계획변경(경상북도 제2007-345)

○ 2008. 01. 04 : 실시계획변경(경상북도 제2008-17호)

○ 2008. 09. 08 :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경상북도 제2008-417,418호)

○ 2008. 09. 22 : 관리기본계획변경(경상북도 제2008-439호)

○ 2009. 09. 04 : 공사준공

○ 2010. 01. 07 :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경상북도 제2010-11호)

○ 2010. 11. 18 : 사업준공(경상북도 제2010-1003호)

○ 2011. 10. 06 :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제2011-405호)

○ 2017. 2. 23 :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주시 제2017-29호)

○ 2017. 8. 21 :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경주시 제2017-138호)

○ 2020. 03. 09 :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제2020-79호)

○ 2022. 03. 03 :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경상북도 제2022-56호)

○ 2022. 10. 31 :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주시 고시 제2022-190호)

마. 분양현황 (변경없음)

구 분	총면적 (㎡)	분양현황(㎡)			조성 기간	조성 기관
		분양	미분양	계		
계	602,934.9	429,768.0	-	429,768.0	'06 ~ '10	경상북도 개발공사
산업시설구역	405,308.2	405,308.2	-	405,308.2		
지원시설구역	14,989.8	14,989.8	-	14,989.8		
공공시설구역	119,842.9	9,470.0	-	9,470.0		
녹지구역	62,794.0	-	-	-		

바. 입주계획(현황) (변경없음)

구 분	입주업체수 (개)				면 적 (㎡)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제조업체	지원시설	기타	계
계	34	14	1	49	405,308.2	14,989.8	9,470.0	429,768.0
2019년 6월 현재	34	13	1	48	405,308.2	13,768.0	9,470.0	428,546.2
향후	-	1	-	1	-	1,221.8	-	1,221.8

사. 입지여건 (변경없음)

시설명	현황 및 사업개요	확 충 계 획		
		규모	일정	시행기관
도로	• 단지내 도로망 - 17개 노선	• 폭 : 4~30m, 길이 : 4,021m	2008 ~ 2010	경상북도 개발공사 사업 시행자
	• 국도7호선 ~ 북측공단입구	• 폭 : 22.5m, 길이 : 1.74km(교량1개소 포함)		경주시 (건교부 지원)
용수	• 공업용수 : 2,247.4㎥/일	• 보문정수장 (3.6천㎥/일) - 관로 : 11.4km(D300~600mm)	2008 ~ 2010	경주시 (건교부 지원)
	• 생활용수 : 400㎥/일)	• 국도7호선 상수관로에서 인입 - 관로 : 2.64km(D100mm)		
전 력	• 생산시설 및 기타시설 (지원시설, 공원, 도로) 지에 공급	- 생산시설 : 88,357MWH/년 - 기타시설 : 3,168MWH/년 • 인근 외동변전소를 통해 인입	2008 ~ 2010	한국 전력공사

시설명	현황 및 사업개요	확 충 계 획		
		규모	일정	시행기관
통 신	• 시설량 : 1,377회선 – 생산시설 : 0.025회선/10㎡ – 지원시설 : 0.03회선/10㎡ – 공공시설 및 여유량 : 생산 및 지원시설 수요량의 30%	• 수요량 : 1,377회선 – 생산시설 : 1,014회선 – 지원시설 : 45회선 – 기 타 : 318회선	2008 ~ 2010	통신 사업자
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발생량 : 291,292.0kg/일 – 생활폐기물 : 51.7kg/일(재활용함) – 사업장 폐기물 : 291,240.3kg/일 • 생활폐기물,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단지 내 폐기물처리 시설에서 처리 • 지정폐기물은 위탁처리	• 처리방법 – 매 립 : 23,882.0kg/일 – 소 각 : 19,468.3kg/일 – 재활용 : 211,084.1kg/일 – 위 탁 : 36,914.0kg/일 •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 매립용량 : 127,315㎥ – 매립연한 : 27.3년	2008 ~ 2010	일반 사업자
폐수 처리	• 오·폐수발생량 : – 공업폐수 : 180.0㎥/일 – 생활오수 : 396.1㎥/일	• 외동 하수처리장 인입 – 차집관로(D300mm, L=472.1m) – 시설규모 : 8,000㎥/일(2011) – 처리공법 : TEC BNR 공법 – 위치 : 외동읍 문산리 864-6일원	2008 ~ 2010	경상북도 개발공사 경주시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기본방향 (변경없음)

(1) 목표

○ 울산소재 자동차 관련업체인 각종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위주로 집단화, 계열화함으로써 경주지역 산업발전을 도모

○ 경주권내 외동읍 일원에 무분별하게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

○ 경주지역의 산업시설 노후화 및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한 신규 산업단지개발의 필요성 대두

(2) 추진방향

○ 자동차부품업 등 첨단산업부문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포항, 울산과 연계한 삼각형의 산업벨트 구축

○ 외부 도로망과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물류비 절감, 수출경쟁력 강화

○ 다양한 지원시설을 확보하고, 대도시 인근의 조건을 이용 근로자 복지향상과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

○ 일체화되고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 프로그램 수립

나. 입주 및 사후 관리계획**(변경)**

(1) 관리할 산업단지 면적 추진방향

(단위 : ㎡)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02,934.9	100.0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산업시설구역	405,308.2	67.2	
지원시설구역	14,989.8	2.5	
공공시설구역	119,842.9	19.8	
녹 지 구 역	62,794.0	10.5	

(2) 입주대상업종, 입주우선순위 사후관리계획

○ 입주대상업종**(변경)**

■ 기정

• 입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에 따라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D35),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공공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E38)

■ 변경

• 입주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항목에 따라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

다)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D35),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공공시설구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E38), **부동산업(L68) (단, 부동산 임대업(6811)에 한함)**

○ 입주제한업종 (변경없음) : 특정유해물 및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입주제한

※ 위 입주제한 업종 외 인근업체에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업종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이라도 특정유해물 및 폐수 다량 배출업체는 입주제한 함.
- 기타환경에 지장을 주는 업체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입주업체 자격**(변경)**

■ 기정

•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창고 및 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자

ㆍ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 공공시설구역(폐기물처리장에 한함)

ㆍ 폐기물처리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단,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하며,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ž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변경**

• 산업시설구역

ㆍ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 창고 및 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ㆍ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ㆍ **부동산업(L68) 중 부동산 임대업(6811)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지원시설구역

ㆍ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자

ㆍ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자

ㆍ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ㆍ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ㆍ 부동산업(L68) 중 부동산 임대업(6811)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

• 공공시설구역(폐기물처리장에 한함)

ㆍ 폐기물처리시설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단, 폐기물 처리시설에 한하며,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ž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입주우선순위 (변경없음)

• 산업시설구역

ㆍ 1순위 : 도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업체

ㆍ 2순위 : 기타 본 산업단지로 이전코자 하는 업체 및 공장을 신설코자하는 자

• 폐기물처리시설

ㆍ 1순위 :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폐기물최종 처리업자(업체)

ㆍ 2순위 :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실수요자

○ 사후관리계획 (변경없음)

• 분양용지 관리

ㆍ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ㆍ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ㆍ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ㆍ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하도록 함

ㆍ 산집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6개월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함

• 환경관리

ㆍ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제구축

ㆍ 산업단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폐수는 개별공장에서 1차처리 후 외동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수질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경주시에서 관리 운영

ㆍ 산업단지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

• 안전관리

ㆍ 풍수해등 재해대책을 위해 경주소방서, 외동읍소방파출소, 경주시등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ㆍ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 및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함

• 기반시설지원

ㆍ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ㆍ 산업단지내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무분별한 노상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

(3)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획 및 공장배치계획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획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02,934.9	100.0	
산업시설구역	405,308.2	67.2	
지원시설구역	14,989.8	2.5	
공공시설구역	119,842.9	19.8	
녹 지 구 역	62,794.0	10.5	

※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도(별첨 1), 용도구역별 면적표(별첨 2)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 기정

• 산업시설구역

ㆍ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ㆍ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 구역

ㆍ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ㆍ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 입주불가(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오락업 등)

• 공공시설 구역

ㆍ 폐기물처리시설을 경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ž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녹지시설구역

ㆍ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 **변경**

• 산업시설구역

ㆍ “산집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ㆍ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제2호 가목2)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입주기업체 지붕에 한함)

• 지원시설 구역

ㆍ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ㆍ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ㆍ 기업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업종은 분양, 입주불가(안마시술소, 여관, 유흥주점, 사행성오락업 등)

ㆍ **“산집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업(건축물 지붕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에 한함)**

• 공공시설 구역

ㆍ 폐기물처리시설을 경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ž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 녹지시설구역

ㆍ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 업종별 공장배치계획(변경없음)

(단위 : 개, ㎡)

단지 및 업종 (중분류)		업체수	면적	비고
계		34	405,308.2	
산업시설구역	1차 금속 제조업	2	30,228.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3	22,731.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5)
	기타 기계 및 장비	7	75,545.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267,283.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1	9,520.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H52)

※ 업종별 배치계획도(별첨 3)

■ 배치기준

、 유치업종별 특성을 고려 연관업종별로 집단화하여 생산성을 도모

、 토지이용, 교통, 단계별 사업계획 등에 부합되고, 획지별 교환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며, 업종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배치

、 업종의 배치와 획지의 분할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계열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획지분할의 합리화를 도모

、 실제 공장부지 분양 시 실수요에 따라 업종별 공장배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

(4) 입주기업체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 공장설립지원 (변경없음)

■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대장에 등록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생산활동지원 (변경없음)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입주업체 생산활동과 수출력 신장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 확보 및 제공

■ 융자금(산업기반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지원 및 알선

○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사업 (변경없음)

■ 취업알선센타 운영을 통한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변경없음)

■ 입주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활동 강화

○ 지원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면적	비고
계	14	14,989.8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지원시설 구역	1	1,057.7	
	1	1,057.9	
	1	1,058.7	
	1	946.9	
	1	1,014.0	
	1	1,805.5	
	1	610.9	
	1	600.3	
	1	585.4	
	1	568.8	
	1	2,054.1	
	1	1,319.7	
	1	1,088.1	
	1	1,221.8	

※ 분양시 필요에 따라 업체수 및 면적이 증감 될 수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단위 : 개, ㎡)

구 분	업체수	면적	비고
공공시설 구역	1	9,470.0	폐기물처리시설 경영에 필요한 건축물 및 부대시설 (공공시설구역 중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함)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지형도면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6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별첨 1 : 용도별 구역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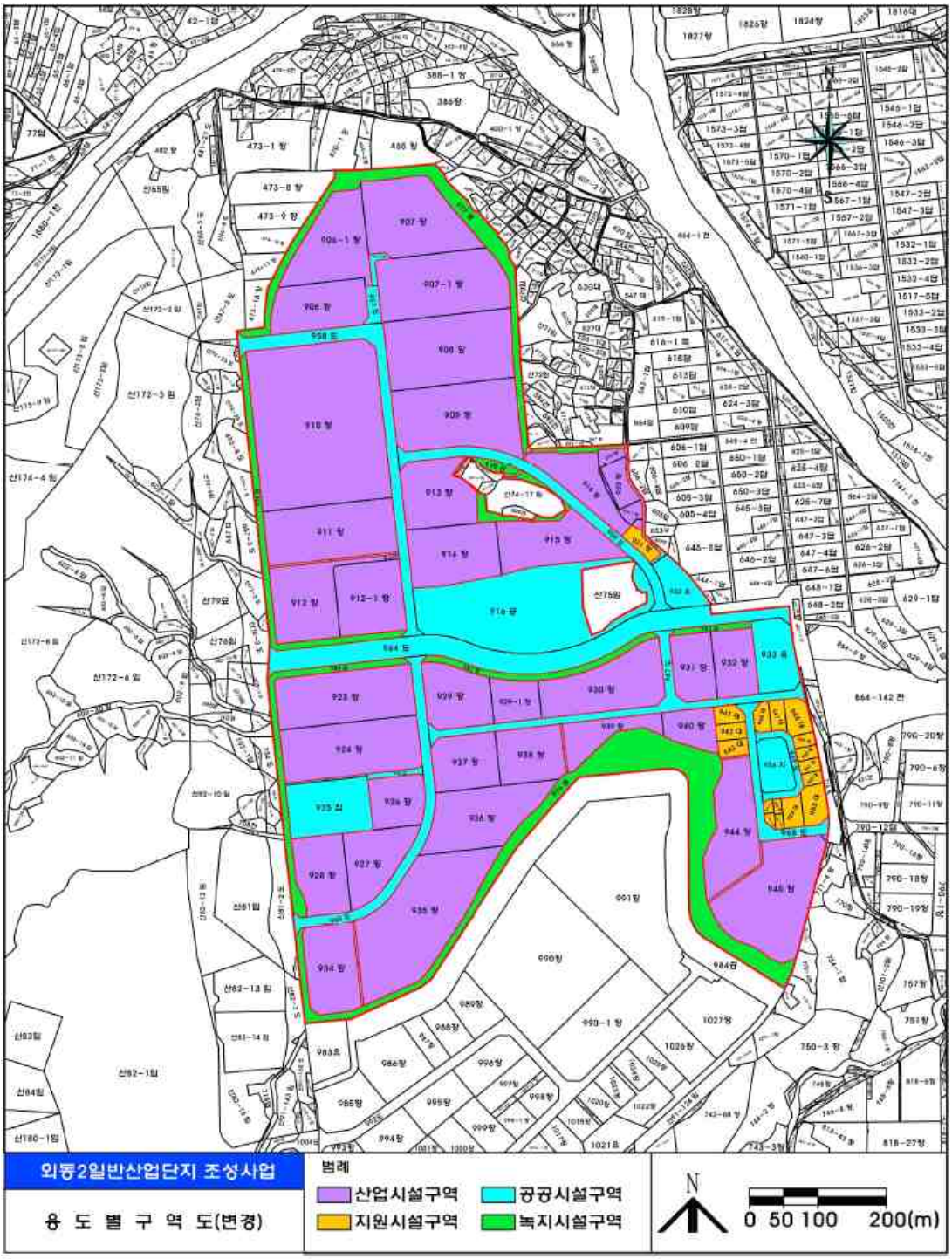

별첨 2 : 용도구역별 면적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계		602,934.9	100.0
산업시설구역	소 계	405,308.2	67.2
	공장시설용도	405,308.2	67.2
지원시설구역	소 계	14,989.8	2.5
	지 원 시 설	14,989.8	2.5
공공시설구역	소 계	119,842.9	19.8
	폐기물처리시설	9,470.0	1.6
	공 원	28,450.1	4.7
	유 수 지	9,780.6	1.6
	주 차 장	3,662.6	0.6
	공 공 공 지	2,045.9	0.3
	도 로	66,433.7	11.0
녹지구역	소 계	62,794.0	10.5
	녹 지	62,794.0	10.5

별첨 3 : 업종별배치 계획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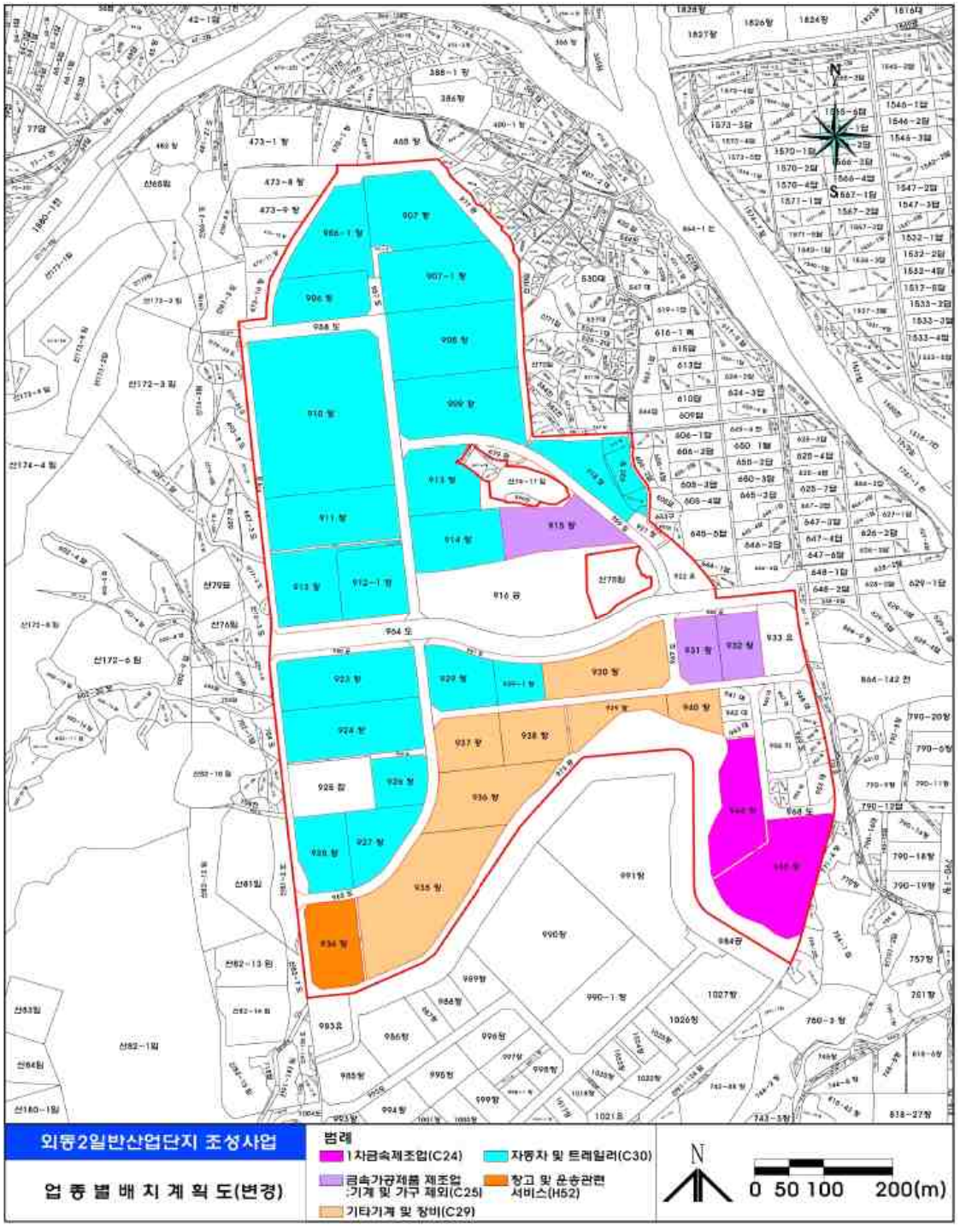

경상북도 고시 제2023-70호

새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안)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새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확장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구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ha)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새터	봉화	봉화	문단	15.8	474	· 수원공 -관정 2개소, 저수조 2개소 · 관로공 -송·급수관로 L=1,910m ·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 L=17m	봉화군수

3. 사업예정기간 : 2023년 03월 ~ 2023년 12월 31일

4. 사 업 효 과 :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득기반 구축과 농업의 기계화 영농으로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54-679-6847)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3-71호

연회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안)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연회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확장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구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ha)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연회골	봉화	소천	분천	17.9	525	· 수원공 -관정 1개소, 저수조 1개소 · 관로공 -송·급수관로 L=5,011m	봉화군수

3. 사업예정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31일

4. 사 업 효 과 :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득기반 구축과 농업의 기계화 영농으로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54-679-6847)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3-72호

황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안)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황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업목적 :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확장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구축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

2. 사업내용 및 구역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ha)	사업비(백만원)	사업개요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황터	봉화	춘양	도심	31.6	948	· 수원공 -양수장 1개소, 저수조 2개소 · 관로공 -송·급수관로 L=8,810m	봉화군수

3. 사업예정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31일

4. 사 업 효 과 :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득기반 구축과 농업의 기계화 영농으로 밭작물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6. 기 타 : 관계 설계도서는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054-679-6847)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고시 제2023-73호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16.

경 상 북 도 지 사

하천명	점용 목적	사업개요 및 점용면적	위 치	점 용 자		점용 기간
				주 소	성 명	
지방하천 (동 천)	교 량 개 체	〈정자교〉 L=77.7m, B=6.5m (영구 1,603㎡) (일시 946㎡)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정족리 1003-2번지 일원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영양군수 (지역개발 과장)	(영구) 허가일로부터 ~ 영구 (일시) 2023.5.1. ~ 2024.4.30.

◈◈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3-556호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세청으로부터 폐업사실이 확인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을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사전처분통지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업 등록말소

나.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상 호 명	업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원인	법적근거
주식회사 영림종합건설 (박종화)	건축공사업 (16-0678)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388, 2층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폐업일자 : 2022.12.1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다. 의견제출 장소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청 도시계획과

라. 의견제출 기한 : 2023년 4월 7일(금)까지

2.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의견진술서 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 도시계획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도시계획과(054-880-3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3-559호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정의 규정(안 제2조)

○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규정(안 제4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사회적경제민생과

전화: 054-880-2632 Fax 054-880-2639, 이메일: dosiba2@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평가 등을 통해 시장·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방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경상북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3-560호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란 조례」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및 기타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으로 주민편익 제공

2. 주요내용

가. 주민편익시설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허가 규정(안 제4조)

다. 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제한 규정(안 제6조)

라. 주민편익시설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규정(안 제7조)

마. 이용료 등(안 제8조)

바. 이용료의 감면(안 제9조)

사. 시설의 위탁관리(안 제11조)

3. 제정안: 붙임

4. 관련법령: 붙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0조, 시행령 제24조

○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ㆍ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호민로 108,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환경에너지팀

ㆍ 전화: 054-880-3643 Fax 054-843-0012

ㆍ 이메일: erika999@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등의 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이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의 일반원칙)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을 목적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제4조(이용 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專用)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

지 못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 이용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5조(이용 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신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단체나 직장 또는 동호인 등 20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문화행사ㆍ공연ㆍ관람ㆍ전시 등의 행사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또는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거나 게시해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 기간, 이용 시간, 이용 수칙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이용 방법
3. 시설별 이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 방법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용(專用) 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 이용을 허용할 경우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②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을 위해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경상북도 고시로 따로 정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이용료를 이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이용한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1. 이용료의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의상자 등의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65세 이상 노인

바. 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도내 주민등록 등재자

사.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이 속한 읍·면·동 지역의 주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경

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월 회원 또는 2개 이상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이용료 납부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개시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3.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잔여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4.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
5.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제11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이용 허가ㆍ이용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주민편익시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이용허가 신청서

이 용 목 적		관람권 발행	여 、 부
		관람권 발행 때 1명당 징수금액	원
이용시설 및 부속시설		이용(예정)인원	명
		사 용 료	원
이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시간)		

이용자 인적사항(대표자)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
행사내용 및 주요계획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 상 북 도 지 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이용허가서

이용자 인적사항(대표)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	
이용시설 및 부속시설			이용인원	명
이 용 기 간 및 시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시간)			
이 용 목 적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이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인)

담당자 : 직 성명 (인)

※ 허가조건

· 관계법령 및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 이용자는 주민편익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편익시설을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이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시설이용 허가 후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 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

경상북도 공고 제2023-571호

의료법인 행정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및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내용 : 의료법인 행정처분(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2. 공고기간 : 2023. 3. 15. ~ 2023. 3. 29. (15일간)

3. 공시송달 방법 : 홈페이지 공고

4. 처분 대상 및 처분내용

의료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일	법적 근거
의료법인 금웅의료재단	문○○ *등기상대표 김○○	김천시 대항면 운*리 3*-1* 번지	- 법원의 의료법 위반 판결 - 의료법 위반 등으로 의료법인 목적사업 이행 불능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2023.2.27	의료법 제51조 민법 제38조

5. 기타사항

가.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기, 의료법 및 법인 정관 규정에 의한 해산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의료기관관리팀(☎054-880-3793)

경상북도 공고 제2023-575호

행정심판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청구인의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재결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취거절 등으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및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3. 3. 16.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3. 3. 16. ~ 2023. 3. 30.(15일)

2. 공고방법 :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3. 공고사항

가. 제 목 :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나.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 및 제195조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구 분	사건번호	사 건 명	청구인
재결서	경북행심 2023-9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 · 질의 통지 무효확인 청구	이양재
	경북행심 2023-10	정보 즉시공개 결정 무효확인 청구	
	경북행심 2023-42, 43	[병합]정보공개 관련 처분 무효확인 청구	
	경북행심 2023-44	정보공개 관련 처분 무효확인 청구	
	경북행심 2023-45	정보공개 관련 처분 무효확인 청구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서류를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북도청 법무혁신담당관(☎054-880-2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시 군

고 시

경주시 고시 제2023-63호

경주 외동3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일원의 외동3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변경)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경 주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경주 외동3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8-12번지 일원

다. 면 적 : 109,61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가. 울산지역의 산업활성화와 경주 외동지역의 산업수요기대 효과로 인하여 울산지역과 연계한 선박, 자동차 관련업종의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정우산업개발

(주) 외 4개사가 필요한 산업용지 및 기반시설을 산업단지로 계획하여 체계적인 산업공간을 조성하고, 경주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가. 성 명 : 정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홍태수 외 4개사

나. 주 소 : 기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22번길 17-8(대잠동)

변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로 142

※ 공동사업시행자 (변경없음)

업체명	대표자	주 소	비 고
(주)엔텍	이인석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고도길 118	
아영중공업(주)	방두성 박은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동해대로2315번길 31	
(주)세일산업	김윤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광천로 394-37	
(주)오성기공	김성곤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자인공단2로4길 49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게재 생략

가. 개발기간 : 2020년 ~ 2023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 나목에 의한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대한 각 호의 사항 (변경없음) : 게재 생략

10.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등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경주시 기업지원과(☎054-779-62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안동시 고시 제2023-35호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고시

안동시 옥동 산7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안동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옥송상록공원 내 비공원시설부지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9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6일

안 동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사업시행 중인 옥동 산 70번지 일원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옥송상록공원 내 비공원시설부지에 대

하여 공동주택 조성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11,332	-	211,33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8,383	48,383	22.9	
자연녹지지역	211,332	감) 48,383	162,949	77.1	

주) 기정 면적은「안동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2021년 5월 31일 「안동시 고시 제2021 - 170호 “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상의 옥송상록공원 전체에 대한 면적임

주)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옥송상록공원 내 비공원시설부지 면적에 한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옥동 산70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8,383	250 이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른 옥송상록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용도지역 변경

3.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 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 고시 제2023-69호

구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액화가스저장소)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미시 산동읍 도중리 하이테크밸리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액화가스저장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3. 16.

구 미 시 장

<table>
<tr><td>1. 사업시행지의 위치</td><td>○ 구미시 산동읍 도중리 하이테크밸리 생산47블럭 1획지(분양지번:016-02-0002)</td></tr>
<tr><td>2. 사업의 종류 및 명칭</td><td>○ 종 류 : 구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액화가스저장소)사업
○ 명 칭 : 구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액화가스저장소) 설치공사</td></tr>
<tr><td>3. 사업의 규모</td><td>
<table>
<tr><th>구 분</th><th>시설명</th><th>규모 및 내역</th><th>비고</th></tr>
<tr><td>가스공급설비
(액화가스
저장소)</td><td>1호
(DIG
AIRGAS)</td><td>· Tank류 총 5기 (용량:2,079.63톤)
· 면적 : 3,000㎡
· 구조 : Plant</td><td></td></tr>
</table>
</td></tr>
</table>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디아이지에어가스(주) 대표 오 규 석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시 부터 2년간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사용·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과 같음.

※ 관계도서는 구미시청 도시계획과(054-480-5406)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끝.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가스공급설비:액화가스저장소)**

면적 :㎡

번호	위치		토지 대장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읍. 리	지 번			주 소	성 명	
계				3,000			
1	산동읍 도중리	016-02-0002	16,530	3,000	-	한국수자원공사	

의성군 고시 제2023-21호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888-8번지 일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군관리계획(공공공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의 성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간시설

1)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공공지	의성읍 원당리 788번지 일원	11,624	감) 8,421	3,203	의성군고시 제2012-63호 (2012.10.18)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공공공지	• 공공공지 면적 축소 - A = 11,624㎡ → 3,203㎡ 감) 8,421㎡	• 수질오염방지시설 확장에 따른 공공공지 면적 축소

나.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의성1	수질오염방지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의성읍 원당리 888-8번지 일원	5,734	증) 18,112	23,846	경상북도고시 제2010-597호 (2010.12.23)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의성1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면적 증가 - A = 5,734㎡ → 23,846㎡ 증) 18,112㎡	• 현재 운영중인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사용용량이 부족하여 증설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 경제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054-830-634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시 군

공 고

상주시 공고 제2023-457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41번지 상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청상배수지) 조성 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을 듣고자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본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6.

상 주 시 장

1. 사업의 위치 :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 41번지

2. 열 람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3. 열 람 장 소 : 상주시청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청리면행정복지센터

(☏054-537-7575, Fax 054-537-6349)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청리면 청하3리 배수관 확장공사)

5.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도남동)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 12. 31.

7. 사업의 규모

가. 청상배수지

- 면적(A)=1,269㎡, 용량(V)=200㎥

부지면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0.00	1,269	증) 1,269	

◈◈◈

기 타

고 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 3. 16.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도시재생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운흥동 300번지 일원 면적 : 5,619㎡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버들섬 주변 친수문화공원 조성 ○ 시설개요 : 친수문화공원 조성 – 바닥분수 광장 L=59.92m(W=20.0m) – 부정형판석포장 471㎡ – 수목이식 219주(소나무 9주 등) – 수경 설비 1식, 전기공사 1식 등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 3. 16.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단천리 1010번지 외 5필지 일원 면적 : 117㎡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댐 스마트 수량-수질 통합관측소 설치 ○ 시설개요 : - 통합관측소 1개소 - 수중펌프 1개소 - 유입·유출배관 L=92m
점 용 기 간	2023년 3월 13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36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 3. 16.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의 명칭	낙동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안동시장(도시재생과)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
점 용 위 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635번지 일원 면적 : 5,329㎡
점 용 목 적 및 시 설 개 요	○ 점용목적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 시설개요 : – 어린이 물놀이 시설 1식 – 고무칩포장 A=800㎡ – 블록포장 A=4,240㎡ – 수경설비 A=217㎡ – 전기인입 L=140m, 보안등 3개소
점 용 기 간	2022년 12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현산댐지사 고시 제2023-1호

하천점용 허가사항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고현천(보현산댐)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영천시장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3. 점용목적 및 개요

-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공사에 따른 하천점용

  * 변경사유 : 인도교 시점부 전망데크 추가조성으로 인한 면적 확대

4. 점용위치 및 면적

- 점용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용소리 70번지 외 83필지
- 점용면적 : 인도교(16,237㎡), 가설사업장(10,906㎡)

5. 점용허가 유효기간

- 인도교(영구), 가설사업장('20. 10. 28. ~ '25. 10. 27.)

한국수자원공사 보현산댐지사장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세상